

2014년 송도1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

감사 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4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4. 11. 03. ~ 11. 06. [4일간]

☐ 감사범위 : 2012. 10.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II

감사 결과

1

총괄

□ 감사처분 내역

- 행정상 조치 총12건
 - 주의 총 09건
 - 시정 총 03건
- 재정상 조치 총05건
 - 추징 22천원/1건
 - 회수 21천원/2건
 - 환부 14천원/2건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계		12건	5건	
1	예산·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	"	물품구입 및 계약관련 가격조사 부적정	주의		
3	"	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	주의		
4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절차 미이행	주의		
5	주민등록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시정	환부(9천원)	
6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및 인증기용 증지 사용 부적정	시정	추징(22천원), 회수(10천원), 환부(5천원),	
7	"	자동인증기 관리 업무 소홀	주의		
8	"	통·반장 제공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시정	회수(11천원)	
9	공사	시설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업무 처리 소홀	주의		
10	"	하자검사 업무 소홀	주의		
11	계약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 이행	주의		
12	민방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주의		

- 이번 송도1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2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3, 주의9), 재정상 조치(추징 22,000원/1건, 회수 21,000원/2건, 환부 14,000원/2건)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 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 직원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 예술·체육활동유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 하도록 있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자생단체 야유회 격려, 타 주민센터 부녀회 격려,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명절선물 구입, 병문안을 위한 화분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2**예산 회계****물품구입 및 계약관련 가격조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불입과 같이 각종 물품구입 및 계약시 시장 가격조사를 소홀히 하여 1인 견적업체의 제시금액을 그대로 품의 지출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3**예산 회계****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정산검사는 보조사업 시행 소관부서에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은 다음해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보조금) 사업의 정산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획과 전혀 다르게 보조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하나 보조금을 현금지출 하였음에도 정산적인 지출로 인정 정산처리하고 다음분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4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절차 미이행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자치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강사 모집 및 관리)에 의하면,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강사 위촉(2013년 3명, 2014년 4명)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할 수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 납부시 100분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며,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¹⁾중 ○○○

1)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2. 3/4분기 09.03-11.02
- 2012. 4/4분기 12.26-01.28
- 2013. 1/4분기 02.01-03.29
- 2013. 2/4분기 05.30-06.28
- 2013. 3/4분기 09.02-09.30
- 2013. 4/4분기 11.11-12.13

외 2명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적용 착오로 과다 부과 하는 등 과태료부과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부 】

6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및 인증기용 증지 사용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용모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 등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1월 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위·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에 따른 재발급처리지침(민원지적과-14707, 2006.11.01)」에 따라 기존 증을 소지한 자가 개선된 증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4호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아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보안기능 추가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에 대해서 기존증을 회수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발급사유를 분실이 아닌 보안기능추가로 하여 수수료를 면제시켰고, 반대로 보안기능추가로 재발급 신청한 □□□에 대해서는 기존증을 회수하였음에도 수수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 또한 분실의 사유로 증 재발급 신청한 ☆☆☆에 대해서는 수수료 5,000원을 면제시켰으며, ◎◎◎외 3명에 대해서는 접수인과 인증기용 증지 입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외 3명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수료 5,000원을 받고 인증기 사용착오로 증지금액을 1,000원, 8,000원으로 과소·과다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 및 인증기용 증지사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회수, 환부 】

7

일반행정

자동인증기 관리 업무 소홀

- 연수구수입증지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 및 연수구자동인증기사용업무 처리지침의 수입금 정산(수입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계기사용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인으로 소인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으로 보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2012. 10. 1 ~ 2014. 9. 30까지 각종 제증명 자동인증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총 6회에 걸쳐 짧게는 1일, 길게는 5일이 지나 납입하였으며, 아울러 발급하지 못하여 결손처리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제증명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결손 처리」 표시용 고무인 또는 X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8

일반행정

통·반장 제공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및 관리 소홀

-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며, 통·반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 또한 동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통·반장은 적십자회비 면제 및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 일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의 2명에 대하여 전출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반에 거주하지 않는 반장 자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3명에 대하여 전출이후 1~2회 쓰레기종량제 일반
용 봉투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감사일 현재까지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대장을 회수하지 않아 쓰레기 봉투 수불사항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는 등 통·반장 지급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9	공 사	시설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업무 처리 소홀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 지정을 통해 공사 진행 단계
별로 수급자가 착·준공신고서 등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
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
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발주된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착·준공계 미접수, 감독공무원 미지정 하였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감독)조서 생략하는 등 준공검사 과정 없이 대금을 지급하
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계법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정기하자검사)에 따라 공사발주관리부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년 2회이상 정기하자검사(4월, 10월)를 실시해야 하고, 동 지침 제4조(최종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최소한 1개월전에 정기하자검사, 수시검사와는 별도의 최종 정밀검사를 실시 하고,
-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의무자 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하나,
-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 발주 시행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완강기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미 실시 하여 하자검사 및 공사완료 후의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 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우리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 공개대상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구청장)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창고 환경개선공사」 등 2건에 대한 계약업무를 완료하고 기간 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12

민 방 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제2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만일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면제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입국조회 등 자체확인후 면제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면제자 승인절차를 거쳐 면제자로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만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음에도 2012~2014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면제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출국자에 대하여 일괄 면제자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IV

수범사례

1. 섬김행정 실천을 위한 현수막 게시

☐ 추진배경

-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구현하는데 추진동력인 섬김행정 실천
-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구민이 편안함을 느낄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

☐ 추진현황

- 일 자 : 2014년 7월 8일
- 장 소 : 송도1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
- 내 용 :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섬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첩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섬김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기대효과

- 마음을 열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어우루는 구정을 펼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의 행정”의 구정목표 달성

2. 제8회 "송도1동 어르신 효잔치" 개최

☐ 추진배경

- 송도국제도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관내 어르신들에게는 삭막한 공간이 될 수 있음.
- 관내 기관·단체 연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孝’자치를 열어 정이 넘치는 이웃임을 느끼도록 해 줌.

☐ 추진현황

- 일 시 : 2014년 7월 11일(금), 12:00~14:00
- 장 소 : 송도1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 내 용 : 송도1동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어르신 400여분을 모시고 송도1동 어르신 ‘孝’잔치 개최

☐ 기대효과

- 송도국제도시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지역 애착심 고취

다. 경로당 어르신 사랑의 밥상 차려주기

- ❖ 관내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경로당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로당 어르신이 차리시는 사랑의 밥상을 참여대상 아동과 함께 나눔으로써 세대간의 유대감 강화와 소통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7월, 12월(방학기간 중)
- 장 소 : 관내 경로당 중 급식제공 가능한 경로당
- 참여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결식아동(청소년)
- 활동내용 : 경로당 어르신들 말벗 및 안마 해 드리기, 청소하기 등

☐ 그 간의 추진상황

- 기 간 : 2014년 하계 방학기간 중
- 참여현황 : 경로당 1개소 / 결식아동 3명
- 추진실적
 - 풍림1차A 경로당 : 김성원(남, 고1), 신유라(여, 고2)
이수빈(여, 고2)
 - 여름방학 중 5회 봉사활동 및 급식제공

☐ 향후 추진계획

- '14년 겨울방학 중 참여 학생 모집 및 경로당 선정
-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세대간의 교감과 온정을 통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